##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- 974호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 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

#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예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(안 제4조의2 신설)

도로의 구조,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, 정책 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## 나. 보내실 곳

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3
49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

ㅇ 전화 : 044-201-3870, 3805 / 팩스 : 044-201-5581